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495 취득세반환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2016. 3. 2.자 지방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징수금 1,277,500원을 반환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가. 원고는 2007. 3. 7. 망 B으로부터 [redacted]군 C 답 1,157㎡[1] 및 D 답 78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C 토지를 '제1토지', D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를 하였다.

(단위 : ㎡, 원)

신고일	토지	과세표준	신고세액				
			합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 교육세
2010. 4. 21.	제1토지	12,727,000	468,330	379,200	37,910	42,690	8,530
2010. 10. 19.	제2토지	8,657,000	326,960	267,380	26,730	27,380	5,470
합계		21,384,000	795,290	646,580	64,640	70,070	14,000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84,070원은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 711,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redacted]새마을금고가 2015. 11. 18. 제1토지 중 [redacted]군 C 답 1,131㎡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취득세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2016. 2. 11. 1,036,410원(가산금 포함)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법·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3. 24. 원고가 이 사건

1) 이후 2011. 9. 5. C 답 1131㎡와 E 답 26㎡로 분할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자도 포함되고,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2010. 9. - 10.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부당징수한 취득세 등의 환급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환급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부당징수한 취득세 등의 반환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려면 그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하게 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취득세 등의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6. 3. 24. 환급거부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과오납한 취득세 등의 환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지방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또는 징수시에,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과세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결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경정청구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감소된 세액만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 또는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구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인 2007. 9. 6.부터 5년 이내인 2012. 9. 6.까지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 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유선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소송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끝.